울 산 광 역 시 남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701호 2022. 9. 16.(금)

규 칙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6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2

고 시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32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3

【 안 내 문 】

□ **남구 전자공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남구소식 → 남구공보에서 열람**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 남구 편집: 정책미디어담당관(☎ 226-5403 행정 540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 제6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소집,”을 “징집, 소집”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 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삭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20 . . .

신고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삭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 카. (생 략)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징집, 소집 ---------- 바. ~ 카.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삭 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공무원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종전의 제5조2항은 4항으로 이동][종전의 제5조3항은 5항으로 이동]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삭 제>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	

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삭 제>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	<삭 제>	

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 ---------- ---------- ---------- ----
<신 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	5.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

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	<삭 제>

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비고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중첩되는 규정 삭제 **(안 제5조, 제5조의2~6, 제13조, 제16조)**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제13조의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반영**(별표1)**

나. 직무관련자 정의 규정 재정비(제2조제1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마목은 직무관련자로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집, 동원”만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어 “징집”을 추가하여 직무관련자 정의 규정 재정비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1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6-1번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주택법」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1. 사업의명칭 : 야음동 836-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시티주택건설 대표 조애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사항)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사 업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6-1번지	좌동	
사 업 면 적	11,589.4㎡	11,593.50㎡	증 4.10㎡
건축면적(건폐율)	1,385.8574㎡ (11.96%)	좌동	
연 면 적(용적률)	23,152.2198㎡ (199.77%)	좌동	
동 수(층 수)	주: 3동, 부: 10동 (지하2층 ~ 지상28층)	좌동	
세 대 수	216세대	좌동	
주 택 형 별	민간분양아파트	좌동	
사 업 비	141,351,721천원	좌동	
변 경 사 항	-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등 실내재료마감 변경 - 조경면적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 2020. 7. ~ 2022. 11.

5.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 해당없음

6.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하천명칭		태화강(국가하천)
점용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번길
	성명	UBC울산방송(김종걸)
점용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 (2022 울산 자전거대축전)
점용위치		신정동 1468번지 일원(태화강 제1둔치)
점용면적		8,000㎡
점용기간		2022. 9. 16. ~ 9. 18.(3일 간)